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체육산업”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체육산업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 영, 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육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 ①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며, 정보공개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실장급을 정보공개분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 정보공개분임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보공개분임관은 소관 부서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전담부서 지정)

체육산업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전담부서는 총무팀으로 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

-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정보공개전담부서에서 담당하고, 공개여부의 결정·통지, 불복 대응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서 실시한다.
- ②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7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문서를 기안할 때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8조(사전정보의 공표)

- ①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4.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체육산업 대표이사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체육산업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③ 사전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 ④ 정보공개책임관은 사전정보공표 항목 및 내용을 추가·수정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① 체육산업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정보공개분임관은 별표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 ① 체육산업은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① 정보공개 관련 주요사안 결정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장으로 한다.
-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전담부서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제16조(공개방법)

-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지침 제14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무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의 관련 직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②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결정이유,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하되,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 ② 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산정하고,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 ③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체육산업 대표이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9조(정보공개 운영현황 지도·점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한다. 이 경우 사전에 점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속직원의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공개 업무 불성실에 따른 조치)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공개를 회피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체육산업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후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명	비공개 근거 및 사유	
	법률근거	비공개 사유
경영상 비밀, 대외비 및 비상계획 관련정보	1호·2호·7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경영, 영업상 비밀
소송업무(진행중인 재판 관련 문서)	4호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 우려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5호·6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1호·7호	통계법 제23조 경영, 영업상 비밀
건축물 도면, 설계도 관련 정보	2호·3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CCTV 녹화 영상정보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비상상황 대처 매뉴얼(비상대처 계획)	2호·3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인사 관련 내부방침 및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신상정보 관련 자료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산업재해 보상결과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교육훈련 성적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채용 및 승진 관련 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성과평가, 근무성적평가 관련 자료	5호·6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징계 관련 자료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승진심사 관련 자료	5호·6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노동조합 관련 정보(소송 관련 정보,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 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4호·5호	진행중인 재판, 범죄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안전 검토 자료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비공개 대상 정보명	비공개 근거 및 사유	
	법률근거	비공개 사유
노무, 법률, 세무 관련 질의자료	5호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에 지장
개인별 의료비 지원내역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개인신상정보 관련 자료 - 급여 관련(개인별 임금 지급현황, 계좌정보 등) - 직원 급여 압류 관련 정보, 건강검진결과 등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용역관련 설계정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예정가격 및 기초가격 산출근거	5호·7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경영, 영업상 비밀
각종 계약서, 신청서 및 관련 일체서류	5호·7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경영, 영업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지출업무(지출관련 계좌번호 등 편철 일체 서류)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공사 관련 실시 설계 및 준공 도서	7호	경영, 영업상 비밀
입찰 등록, 평가 관련 서류 (입찰관련 신청서, 첨부서류, 경영상태 정보 등)	5호·7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
회원 신상정보 관련 자료(홈페이지, 스포츠센터, 공연관람, 평생교육원 회원)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통행차량 세부정보(차량번호 등)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방재센터 시스템 운영, 관리 관련 자료	2호·3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각종 설비 제어 프로그램 소스 제공	7호	경영, 영업상 비밀
체납자 관리 현황 및 개인정보 등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각종 입찰 및 계약금액 등 현황	5호·6호	공정한 계약 업무 침해 경영, 영업상 비밀
장소별 임대 계약자 현황	6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외부 사정기관 범죄사실 통보 등 조사관련 정보	4호·5호	공정한 재판 및 직무수행 지장
외부기관 감사관련 서류 일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자체감사, 감찰 또는 조사 관련서류 일체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회원관리, 대관예약 시스템상 등 각종 고객 정보	5호~7호	경영, 영업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 정보 침해
정보보안, 정보통신, 전산시스템 관련 정보	2호·6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